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[별표 7] <개정 2022. 11. 29.>

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(제74조제6항 관련)

시 험 구 분	시 험 과 목
1. 제1차 시험	<p>가. 민법(총칙, 물권, 채권 중 총칙·계약총칙·매매·임대차·도급·위임·부당이득·불법행위)</p> <p>나. 회계원리</p> <p>다. 공동주택시설개론(목구조·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,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)</p>
2. 제2차 시험	<p>가. 주택관리 관계법규: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「주택법」</li> <li>2) 「공동주택관리법」</li> <li>3)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</li> <li>4) 「공공주택 특별법」</li> <li>5) 「건축법」</li> <li>6) 「소방기본법」</li> <li>7)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</li> <li>8)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</li> <li>9) 「전기사업법」</li> <li>10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</li> <li>11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</li> <li>12)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</li> <li>13)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</li> </ol> <p>나. 공동주택관리실무</p> <p>시설관리, 환경관리, 공동주택회계관리, 입주자관리, 공동주거관리이론, 대외업무, 사무·인사관리, 안전·방재관리 및 리모델링, 공동주택 하자관리(보수공사를 포함한다) 등</p>